

1. 개정이유

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339호, 2024. 2. 20. 공포, 2024. 5. 2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방법 삭제(안 제26조제4항 및 별지 제17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국무조정실 사전 심사 요청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4항 중 “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, 임시운행허가번호판”을 “임시운행허가번호판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임시운행허가신청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를 운행하려는 때에는 <u>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,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26조(임시운행허가신청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 <u>임시운행허가번호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